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75호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고 시 제 1 8 5 호 도시관리계획(서창2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 고 시 제 1 8 6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주적체육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7
- 고 시 제 1 8 7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59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85호

도시관리계획(서창2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서창2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 도시관리계획(서창2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III. 도시관리계획(서창2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서창2 공공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2,099,796.0	-	2,099,796.0	건설교통부 제2007-492호 (2007.11.09.)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99,796.0	-	2,099,796.0	100.0	
주거지역	소 계	1,167,572.1	-	1,167,572.1	55.6	
	제1종일반주거지역	49,674.0	-	49,674.0	2.4	
	제2종일반주거지역	15,130.4	-	15,130.4	0.7	
	제3종일반주거지역	184,697.5	-	184,697.5	8.8	
	준주거지역	918,071.2	-	918,071.2	43.7	
녹지지역	소 계	106,806.3	-	106,806.3	5.1	
	자연녹지지역	106,806.3	-	106,806.3	5.1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없음)

(1) 도로 (변경 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62	16,461	309,956.1	
일반도로	계		-	47	15,644	305,063.9	가각면적포함
	대로	소계	-	4	3,378	104,631.6	
		2	30	1	1,561	54,689.0	
		3	25	3	1,817	49,942.6	
	중로	소계	-	20	8,547	167,539.1	
		1	20	7	5,440	123,507.2	
		2	15	5	1,712	26,905.1	
		3	12	8	1,395	17,126.8	
	소로	소계	-	23	3,719	32,893.2	
		1	10	11	2,005	20,336.7	
		2	8	10	904	7,790.2	
		3	6	2	810	4,766.3	
보행자전용도로	계		-	15	817	4,892.2	
	소로	소계	-	15	817	4,892.2	
		3	6	15	817	4,892.2	

○ 도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76	30.5~41.5	주간선도로	1,561	서창동 중1-316	서창동 710 공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대로	3	105	25~28	주간선도로	1,201	서창동 대2-76	서창동 448-12 도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대로	3	106	25	집분산도로	359	서창동 중1-313	서창동 대3-105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대로	3	107	25	집분산도로	257	서창동 대2-76	서창동 중1-313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1	313	20~23	보조간선도로	1,917	서창동 중1-314	서창동 소3-16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1	314	20~23	보조간선도로	903	서창동 대2-76	서창동 중1-313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1	315	20~23	보조간선도로	254	서창동 대2-76	서창동 중2-315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16	20~25	보조간 선도로	145	서창동 대2-76	서창동 491-4 답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1	317	20~26	집산 도로	132	서창동 중1-314	서창동 중2-601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1	318	20~24	집산 도로	258	서창동 중1-314	서창동 대2-76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1	319	20~26	집산 도로	1,831	서창동 502-3 잡	서창동 810 천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01	15~18	집산 도로	386	서창동 757 공	서창동 중3-369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2	602	15	집산 도로	220	서창동 중3-369	서창동 중1-314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2	603	15	집산 도로	599	서창동 중1-318	서창동 대2-76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2	604	15	집산 도로	407	서창동 중1-315	서창동 대2-76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2	605	15	집산 도로	100	서창동 중2-604	서창동 745 대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3	369	12	집산 도로	110	서창동 중2-602	서창동 104-47 구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3	370	12	집산 도로	256	서창동 대3-105	서창동 중1-313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3	371	12	국지 도로	200	서창동 대3-106	서창동 대3-106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3	372	12	국지 도로	264	서창동 대3-107	서창동 대3-107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3	373	12	국지 도로	168	서창동 대2-76	서창동 중1-316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3	374	12	국지 도로	226	서창동 중1-318	서창동 중1-318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3	375	12	국지도 로	50	서창동 대2-76	서창동 673 학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중로	3	376	12	국지 도로	121	서창동 중1-315	서창동 중1-315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240	서창동 중1-319	서창동 중1-313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159	서창동 소2-34	서창동 중1-313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1	3	10	집산 도로	449	서창동 중1-313	서창동 중1-313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78	서창동 소1-2	서창동 소1-1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79	서창동 소1-3	서창동 소1-3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308	서창동 중3-370	서창동 중3-370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180	서창동 중3-370	서창동 중3-370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56	서창동 중3-370	서창동 중3-370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1	9	10	국지 도로	188	서창동 소1-3	서창동 656 수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84	서창동 중3-373	서창동 소2-10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84	서창동 중3-373	서창동 734-6 대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39	서창동 소1-2	서창동 소1-1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09	서창동 소1-2	서창동 소1-1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81	서창동 소1-3	서창동 소1-3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75	서창동 소1-3	서창동 소1-3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69	서창동 소1-3	서창동 소1-3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10	서창동 중3-370	서창동 소1-6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66	서창동 소1-7	서창동 중3-370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71	서창동 소1-7	서창동 중3-370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92	서창동 소1-10	서창동 소1-11	일반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92	서창동 소1-10	서창동 소1-11	일반도로		국고 제811호 (2011. 12. 27)	
기정	소로	3	1	6	특수 도로	55	서창동 대3-106	서창동 692 대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2	6	특수 도로	40	서창동 대3-106	서창동 중3-371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3	6	특수 도로	45	서창동 중3-371	서창동 대3-105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4	6	특수 도로	48	서창동 대3-107	서창동 702대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5	6	특수 도로	42	서창동 대3-107	서창동 중3-372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6	6	특수 도로	48	서창동 중 3-372	서창동 대3-105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23	서창동 소1-7	서창동 대3-105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23	서창동 소1-9	서창동 대3-105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9	6	특수 도로	36	서창동 중3-374	서창동 대2-76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0	6	특수 도로	25	서창동 중3-374	서창동 소3-11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11	6	특수 도로	123	서창동 중1-318	서창동 724 공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12	6	특수 도로	126	서창동 중1-318	서창동 724 공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13	6	특수 도로	47	서창동 소1-10	서창동 725 공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14	6	특수 도로	21	서창동 소1-11	서창동 725 공	보행자 전용도로		건고 제492호 (2007. 11. 9)	
기정	소로	3	15	6	특수 도로	115	서창동 681 공	서창동 중1-313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 제811호 (2011. 12. 27)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65	서창동 중1-313	서창동 634 수	일반도로		국고 제1012호 (2015. 12. 23)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645	서창동 중2-605	서창동 810 천	일반도로		국고 제1012호 (2015. 12. 23)	

(2) 주차장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계			7개소	13,634.5		
기정	1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1 차	1,336.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5 차	1,832.4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9 차	2,223.1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4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6 차	3,129.8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5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8 차	1,999.6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6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1 차	1,164.6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7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1 차	1,949.0	건고 제492호 (2007.11.09)	

(3) 자동차정류장 (변경 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14,382.2		
기정	1	공영 차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728 주	14,382.2	건고 제492호 (2007.11.09)	

나) 공간시설 (변경 없음)

(1) 공원 (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3개소	487,292.5		
근린공원 소계				3개소	421,237.7		
기정	1	공원	근린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9 공	333,049.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공원	근린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1 공	42,487.8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공원	근린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3 공	45,700.9	건고 제492호 (2007.11.09)	
수변공원 소계				4개소	54,008.8		
기정	1	공원	수변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1 공	9,031.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공원	수변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4 공	8,693.6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공원	수변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6 공	7,233.2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4	공원	수변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3 공	29,051.0	건고 제492호 (2007.11.09)	
어린이공원 소계				6개소	12,046.0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7 공	1,587.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8 공	2,625.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8 공	1,602.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4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9 공	2,552.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5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6 공	1,771.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6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6 공	1,909.0	건고 제492호 (2007.11.09)	

(2) 녹지 (변경 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계	195,459.2		
완충녹지 소계				2개소	24,767.7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2-1 공 일원	9,429.2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녹지	완충 녹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9-1 공 일원	15,338.5	건고 제492호 (2007.11.09)	
경관녹지 소계				7개소	170,691.5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8 공	7,256.8	국고 제649호 (2010.09.20)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4 공	19,762.1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녹지	경관 녹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5 공	14,077.7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4	녹지	경관 녹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2 공	1,363.9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5	녹지	경관 녹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2 공	2,536.4	국고 제649호 (2010.09.20)	
기정	6	녹지	경관 녹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5, 641 공	44,050.3	국고 제649호 (2010.09.20)	
기정	7	녹지	경관 녹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5 공	31,964.2	국고 제649호 (2010.09.20)	
기정	8	녹지	경관 녹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7 공	7,309.1	국고 제811호 (2011.12.27)	
기정	9	녹지	경관 녹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0, 714 공	42,371.0	국고 제811호 (2011.12.27)	

(3) 공공공지 (변경 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33,557.2		
기정	1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9-3 공 일원	1,152.8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0-2 공 일원	888.6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7-5 공	398.8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4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0-5 공	346.4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5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9-1 공 일원	1,092.3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6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9-3공 일원	1,859.6	건고 제492호 (2007.11.0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3-4 공	413.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8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6-1 공 일원	1,588.5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9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1-1공 일원	1,077.4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10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2-2공 일원	2,008.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11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5-1공 일원	1,715.1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12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5-1공 일원	1,463.4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13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1-5 공 일원	3,619.2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14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7-4 공 일원	2,750.5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15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3-4공 일원	4,112.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16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7-4공 일원	3,385.7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17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9-4 공 일원	2,120.6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18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5-2공 일원	1,121.2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19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2-5 공 일원	1,845.1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0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4-2답 일원	379.4	건고 제492호 (2007.11.09)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변경 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2,931.0		
기정	1	변전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6 잡	2,931.0	건고 제492호 (2007.11.09)	

(2) 열공급설비 (변경 없음)

○ 열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1,497.0		
기정	1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2 잡	1,497.0	건고 제492호 (2007.11.09)	

(3) 가스공급설비 (변경 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2개소	75.0		
기정	1	가스공급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5-4 잡	15.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가스공급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1 잡	60.0	건고 제649호 (2010.09.20)	

(4) 수도공급설비 (변경 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2개소	3,926.0		
기정	1	배수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6 수	3,926.0	건고 제492호 (2007.11.09)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1) 학교 (변경 없음)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5개소	65,143.0		
초등학교 소계				3개소	37,519.0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8 학	12,861.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4 학	12,021.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3 학	12,637.0	건고 제492호 (2007.11.09)	
중학교 소계				1개소	12,313.0		
기정	1	학교	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8 학	12,313.0	건고 제492호 (2007.11.09)	
고등학교 소계				1개소	15,311.0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8 학	15,311.0	건고 제492호 (2007.11.09)	

(2) 공공청사 (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3개소	3,532.0		
기정	1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0 대	1,140.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1 대	992.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3 대	1,400.0	건고 제492호 (2007.11.09)	

(3) 문화시설 (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문화시설	문화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0 대	14,420.0	감14,420.0	-	건고 제492호 (2007.11.09)	

○ 문화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문화시설	문화시설 해제(전부) A=14,420.0㎡→A=0㎡(감 14,420㎡)	기존 문화시설용지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문화·체육·보건시설 등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시설 폐지

(4)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6,774.0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7 대	6,774.0	건고 제492호 (2007.11.09)	

마) 방재시설 (변경 없음)

(1) 하천 (변경 없음)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계			1개소	-	-	-	-	-	-		
기정	1	하천	지방 하천	운연동 195-63천 일원	서창동 85-26답 일원	-	0.621	30~35	24,591.4	건고 제492호 (2007.11.09)	운연천

(2) 저류지 (변경 없음)

○ 저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2개소	15,115.5		
기정	1	저류지	저류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7 수	6,289.9	건고 제492호 (2007.11.09)	펌프 시설 포함
기정	2	저류지	저류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4 수	8,825.6	건고 제649호 (2010.09.20)	펌프 시설 포함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1) 하수도 (변경 없음)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121.9		
기정	1	오수중계 펌프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0 수	121.9	건고 제492호 (2007.11.09)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계	-	40,993.9	-	-	40,993.9	
E1	①	1,288.9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7-1 대	313.8	필지 합병 불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7-2 대	321.7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7-3 대	327.7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7-4 대	325.7	
	②	2,442.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5-1 대	244.6	필지 합병 불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5-2 대	243.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5-3 대	244.5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5-4 대	244.5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5-5 대	244.8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5-6 대	243.4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5-7 대	243.6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5-8 대	244.6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5-9 대	244.7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5-10 대	244.5	
	③	4,448.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1 대	261.0	필지 합병 불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2 대	258.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3 대	259.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4 대	259.0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5 대	259.0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6 대	261.0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7 대	260.0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8 대	259.0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9 대	259.8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10 대	262.2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11 대	265.0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12 대	265.0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13 대	265.0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14 대	264.0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15 대	263.0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16 대	264.0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17 대	264.0	
	④	1,483.3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3-1 대	243.7	필지 합병 불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3-2 대	247.7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3-3 대	248.7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3-4 대	249.7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3-5 대	249.7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3-6 대	243.8	
	①	1,172.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2-1 대	293.0	필지 합병 불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2-2 대	293.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2-3 대	293.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2-4 대	293.0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E2	②	2,450.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3-1 대	271.2	필지합병 필분합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3-2 대	275.3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3-3 대	273.3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3-4 대	273.3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3-5 대	270.2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3-6 대	271.2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3-7 대	272.3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3-8 대	272.2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3-9 대	271.2	
	③	2,112.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4-1 대	267.0	필지합병 필분합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4-2 대	267.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4-3 대	267.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4-4 대	267.0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4-5 대	261.0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4-6 대	261.0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4-7 대	261.0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4-8 대	261.0	
	④	1,900.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5-1 대	261.8	필지합병 필분합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5-2 대	264.8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5-3 대	264.8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5-4 대	262.7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5-5 대	283.8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5-6 대	281.8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5-7 대	280.8	
E3	①	2,068.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6-1 대	257.0	필지합병 필분합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6-2 대	261.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6-3 대	250.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6-4 대	253.0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6-5 대	261.0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6-6 대	262.0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6-7 대	263.0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6-8 대	261.0	
	②	2,128.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7-1 대	265.5	필지합병 필분합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7-2 대	271.5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7-3 대	270.5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7-4 대	268.6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7-5 대	263.5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7-6 대	263.5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7-7 대	262.5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7-8 대	262.5	
	③	1,612.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0-1 대	269.4	필지합병 필분합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0-2 대	268.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0-3 대	268.4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0-4 대	268.4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0-5 대	268.4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0-6 대	269.5	
	④	3,140.9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1 대	259.9	필지합병 필분합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2 대	256.7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3 대	258.7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4 대	259.7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5 대	259.7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6 대	259.7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E4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7 대	265.0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8 대	263.7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9 대	263.7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10 대	264.7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11 대	264.7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12 대	264.7	
	⑤	3,624.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1 대	259.7	분할 합병 불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2 대	262.7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3 대	259.7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4 대	259.7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5 대	259.7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6 대	259.7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7 대	259.6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8 대	256.9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9 대	256.9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10 대	256.9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11 대	255.9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12 대	259.9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13 대	260.9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14 대	256.0	
	①	3,296.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1 대	273.9	필지 분할 합병 불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2 대	275.1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3 대	275.1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4 대	274.6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5 대	274.6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6 대	274.9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7 대	274.8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8 대	274.6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9 대	274.6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10 대	275.1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11 대	275.1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12 대	274.0	
	②	947.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9-1 대	265.7	필지 분할 합병 불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9-2 대	327.5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9-3 대	354.6	
	③	3,299.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1 대	274.9	필지 분할 합병 불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2 대	274.8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3 대	274.8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4 대	274.7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5 대	274.7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6 대	275.0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7 대	274.7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8 대	275.2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9 대	275.2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10 대	274.9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11 대	274.8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5-12 대	275.4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④	1,934.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4-1 대	305.5	필지합병 불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4-2 대	319.2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4-3 대	320.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4-4 대	320.7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4-5 대	321.4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4-6 대	347.7	
	⑤	1,030.7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3-1 대	509.6	필지합병 불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3-2 대	521.1	
	⑥	614.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8-1 대	272.2	필지합병 불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8-2 대	342.0	

○ 공동주택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 치	면적(㎡)	비고
계	-	780,919.0	-	780,919.0	
1BL	1BL	75,40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6 대	75,403.0	
2BL	2BL	58,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6 대	58,522.0	
3BL	3BL	47,978.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9 대	47,978.0	
4BL	4BL	37,19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0 대	37,194.0	
5BL	5BL	66,14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2 대	66,141.0	
6BL	6BL	48,038.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5 대	48,038.0	
7BL	7BL	82,82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8 대	82,827.0	
8BL	8BL	31,63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2 대	31,632.0	
9BL	9BL	38,35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2 대	38,355.0	
10BL	10BL	49,26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5 대	49,260.0	
11BL	11BL	67,99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5 대	67,996.0	
12BL	12BL	56,75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7 대	56,752.3	
13BL	13BL	77,709.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5 대	77,709.0	
14BL	14BL	26,39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4 대	26,394.7	
15BL	15BL	16,71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9 대	16,717.0	

○ 근린생활시설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1,820	-	-	21,828.9	
근생1	①	1,295.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0-1 대	323.0	필지합병 불허 인접지 내병합 가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0-2 대	330.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0-3 대	331.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0-4 대	311.0	

분류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근생2	①	1,904.7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3-1 대	675.2	필지분할허 인접한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3-2 대	614.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3-3 대	615.1	
	②	2,738.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4-1 대	470.6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4-2 대	554.7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4-3 대	567.7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4-4 대	579.7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4-5 대	565.8	
	③	1,349.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9-1 대	462.3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9-2 대	465.2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9-3 대	422.3	
근생3	①	1,918.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2-1 대	468.2	필지분할허 인접한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2-2 대	473.3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2-3 대	482.3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2-4 대	494.3	
	②	2,025.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0-1 대	490.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0-2 대	522.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0-3 대	490.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0-4 대	523.0	
	③	1,956.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9-1 대	489.4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9-2 대	489.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9-3 대	489.4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9-4 대	488.4	
	④	3,893.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3-1 대	973.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3-2 대	645.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3-3 대	635.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3-4 대	628.0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3-5 대	1,012.0	
근생4	①	1,479.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3-1 대	737.0	필지분할허 인접한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3-2 대	742.4	
	②	1,018.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0-1 대	508.9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0-2 대	509.3	
	③	2,250.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7-1 대	564.8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7-2 대	563.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7-3 대	562.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7-4 대	560.4	

○ 상업시설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블록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47,890.7	-	-	47,890.7	
일상1	①	5,014.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0-1 대	1,660.4	필지 분할 불허 인접한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0-2 대	1,638.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0-3 대	1,715.3	
	②	4,445.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1-1 대	1,565.5	필지 분할 불허 인접한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1-2 대	1,397.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1-3 대	1,482.7	
	③	1,432.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8 대	1,432.8	필지 분할 불허
	④	5,127.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6-1 대	1,924.9	필지 분할 불허 인접한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6-2 대	1,830.9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6-3 대	1,371.6	
	⑤	8,593.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7-1 대	1,295.9	필지 분할 불허 인접한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7-2 대	1,278.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7-3 대	6,019.2	
일상2	①	2,888.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3-1 대	1,520.5	필지 분할 불허 인접한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3-2 대	1,368.1	
	②	4,285.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4-1 대	1,325.7	필지 분할 불허 인접한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4-2 대	1,438.1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4-3 대	1,522.0	
	③	2,919.3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5 대	2,919.3	필지 분할 불허
	④	5,267.9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7-1 대	1,774.0	필지 분할 불허 인접한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7-2 대	1,768.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7-3 대	1,725.5	
	⑤	7,916.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8-1 대	1,728.0	필지 분할 불허 인접한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8-2 대	1,756.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8-3 대	2,333.3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8-4 대	2,099.2	

○ 주차장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획 지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13,634.5		
기정	1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1 차	1,336.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5 차	1,832.4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9 차	2,223.1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4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6 차	3,129.8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5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8 차	1,999.6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6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1 차	1,164.6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7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1 차	1,949.0	건고 제492호 (2007.11.09)	

○ 공영차고지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획지		최초 결정일	비고
				위 치	면적(㎡)		
계				-	14,382.2		
기정	1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9 차	14,382.2	건고 제492호 (2007.11.09)	

○ 유치원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획지		최초 결정일	비고
				위 치	면적(㎡)		
계				3개소	2,779.0		
기정	1	유치원	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6 대	897.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유치원	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7 대	905.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유치원	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4 대	977.0	건고 제492호 (2007.11.09)	

○ 학교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5개소	65,143.0		
초등학교 소계				3개소	37,519.0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8 학	12,861.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4 학	12,021.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3 학	12,637.0	건고 제492호 (2007.11.09)	
중학교 소계				1개소	12,313.0		
기정	1	학교	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8 학	12,313.0	건고 제492호 (2007.11.09)	
고등학교 소계				1개소	15,311.0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8 학	15,311.0	건고 제492호 (2007.11.09)	

○ 공공청사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3개소	3,532.0		
기정	1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0 대	1,140.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1 대	992.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3 대	1,400.0	건고 제492호 (2007.11.09)	

○ 사회복지시설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6,774.0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7 대	6,774.0	건고 제492호 (2007.11.09)	

○ 문화시설용지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문화시설	문화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0 대	14,420.0	감14,420.0	-	건고 제492호 (2007.11.09)	

○ 종교시설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3개소	8,173.0		
기정	1	종교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2 종	3,266.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종교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7 종	3,046.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3	종교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2 종	1,861.0	건고 제492호 (2007.11.09)	

○ 주유소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2개소	4,803.0		
기정	1	주 유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8 주	3,732.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주 유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1 주	1,071.0	건고 제492호 (2007.11.09)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1,497.0		
기정	1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2 잡	1,497.0	건고 제492호 (2007.11.09)	

○ 변전시설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2,931.0		
기정	1	변전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6 잡	2,931.0	건고 제492호 (2007.11.09)	

○ 오수중계펌프장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121.9		
기정	1	오수중계펌프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0 수	121.9	건고 제492호 (2007.11.09)	

○ 배수시설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3,926.0		
기정	1	배수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6 수	3,926.0	건고 제492호 (2007.11.09)	

○ 가스공급시설용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2개소	75.0		
기정	1	가스공급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5-4 잡	15.0	건고 제492호 (2007.11.09)	
기정	2	가스공급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1 잡	60.0	국고 제649호 (2010.09.20)	

○ 복합커뮤니티센터용지 결정조서 :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0	-	14,420.0	14,420.0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R1)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E3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80%이하
	높이		■ 2층 이하
	허용 가구수		-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형태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평지붕은 20%이내 허용한다. ■ 지붕의 경사는 4/10 으로 설치, 눈썹지붕은 불허한다.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이하의 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 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설치를 불허한다.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이 가능하다.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가능 하다(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색채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체색은 그대로 적용한다.)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 건축선에 의한 공지는 친환경소재의 도입을 권장한다.

○ 단독주택용지(R2)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4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및 다목적 다가구주택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4층 이하
	허용 가구수		■ 5가구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형태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평지붕은 20%이내 허용한다. ■ 지붕의 경사는 4/10 으로 설치, 눈썹지붕은 불허한다.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이하의 담장 설치를 권장 한다. ■ 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를 불허한다.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이 가능하다.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가능 하다(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색채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한다.)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 건축선에 의한 공지는 친환경소재의 도입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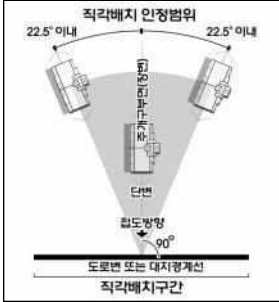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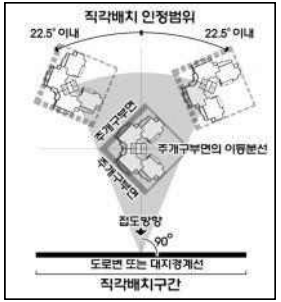
○ 공동주택용지(60㎡이하)(A)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BL, 2BL, 12BL, 15BL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 주택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7호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BL,12BL : 165% 이하 ■ 2BL:180% ■ 15BL : 190% 이하
	높이		■ 25층 이하 - 최고층수 25층 - 중층배치구간은 10층 이하로 한다. - 송신소의 전파장애를 고려한 고도제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배치		■ 건축물(주동)의 직각배치 - 직각배치구간으로 지정된 곳(대3-1호선, 중1-2호선변)의 공동주택용지 내 해당구간의 주동은 도로에 대하여 주동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각배치되도록 하여 소음의 저감 또는 통경축을 확보한다. · 판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한다. · 탑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동분선이 직각으로 배치한다. - 단, 접도방향 또는 대지경계선, 장아산 통경축에 대하여±22.5°범위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직각배치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판상형 예시도> <탑상형 예시도>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BL, 2BL, 12BL, 15BL	형태	■ 지붕, 옥탑 등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 (단, 특화된 주동의 경우 예외) ■ 피로티 - 단지 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 위해 주동의 지상층에 피로티를 설치 시 유효높이 4M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저감,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마감한다.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1층~3층 구간내), 중층부, 상층부(최상층 1층~3층 구간내)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한다.
	건축선	■ 대지 내에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구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 공동주택용지(60㎡~85㎡)(B)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3BL, 4BL, 5BL, 6BL, 8BL, 9BL, 10BL, 13BL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 주택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7호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3BL : 175% 이하 ■ 4BL, 9BL, 13BL : 180% 이하 ■ 5BL : 190% 이하 ■ 10BL : 195% 이하 ■ 6BL, 8BL : 200%이하
	높 이		■ 25층 이하 - 최고층수 25층 - 중층배치구간은 10층이하로 한다. - 송신소의 전파장애를 고려한 고도제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배 치		■ 건축물(주동)의 직각배치 - 직각배치구간으로 지정된 곳(대3-1호선, 중1-2호선변)의 공동주택용지내 해당구간의 주동은 도로에 대하여 주동의 장변(주 개구부면)이 직각배치되도록 하여 소음의 저감 또는 통경축을 확보한다. · 판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한다. · 탑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한다. - 단, 접도방향 또는 대지경계선, 장아산 통경축에 대하여 ±22.5° 범위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직각배치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3BL, 4BL, 5BL, 6BL, 8BL, 9BL, 10BL, 13BL	배 치	〈관상형 예시도〉  〈탐상형 예시도〉  ■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의 이용 및 접근성제고를 위하여 기능별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 내에 적정배치토록 한다. ■ 바람길, 통경축 확보 - 바람길 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하여 탐상형과 관상형을 적정혼합배치 한다. ■ 주동은 도로 또는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건축선 폭원이상 이격하여 배치되도록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중층 배치구간 - 하천변 및 단독주택용지, 학교 등 미개발 또는 저개발대지와 인접한 경우 개방감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하며, 10층 이하의 주동을 배치한다. ■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공사시 업무 등의 용도는 허용한다
	형태	■ 지붕, 옥탑 등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 (단, 특화된 주동의 경우 예외) ■ 피로티 - 단지 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 위해 주동의 지상층에 피로티를 설치 시 유효높이 4M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저감,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마감한다.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1층~3층 구간내), 중층부, 상층부(최상층 1층~3층 구간 내)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한다.
	건축선	■ 대지 내에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구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 공동주택용지(60㎡이하 (A), 60㎡~85㎡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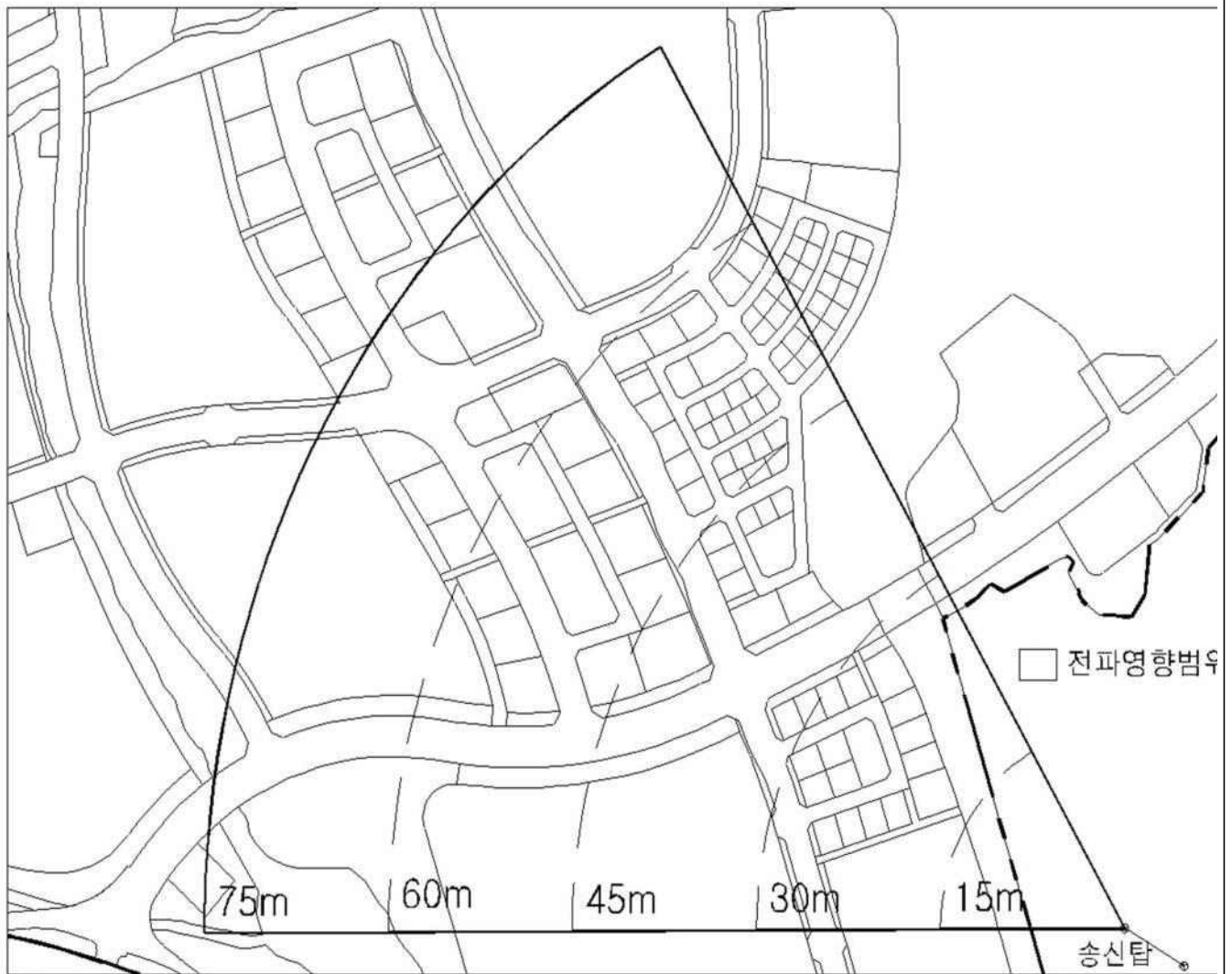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1BL, 14BL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 주택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7호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1BL : 165% 이하 ■ 14BL : 170% 이하
	높이		■ 25층 이하 - 최고층수 25층 - 송신소의 전파장해를 고려한 고도제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배치		■ 건축물(주동)의 직각배치 - 직각배치구간으로 지정된 곳(대3-1호선, 중1-2호선변)의 공동주택용지 내 해당구간의 주동은 도로에 대하여 주동의 장변(주 개구부면)이 직각 배치되도록 하여 소음의 저감 또는 통경축을 확보한다. · 판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한다. · 탐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한다. - 단, 접도방향 또는 대지경계선, 장아산 통경축에 대하여 $\pm 22.5^\circ$ 범위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직각배치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판상형 예시도> <탐상형 예시도>

○ 공동주택용지(60㎡이하 (A), 60㎡~85㎡ (B), 85㎡초과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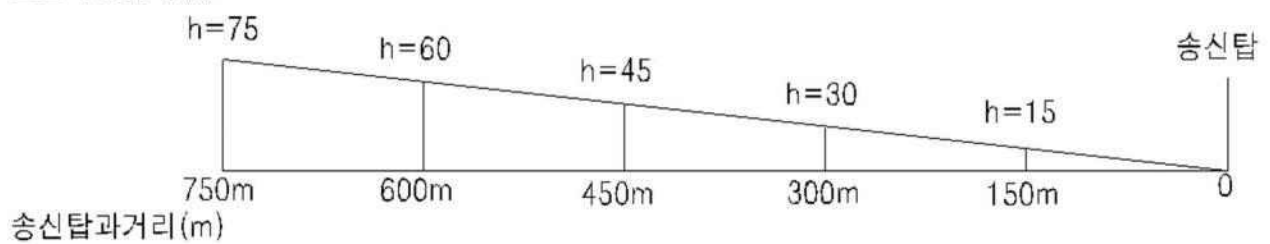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7BL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 주택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7호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70% 이하
	높이		■ 25층 이하 - 최고층수 25층 - 송신소의 전파장해를 고려한 고도제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7BL	배 치	■ 건축물(주동)의 직각배치 - 직각배치구간으로 지정된 곳(대3-1호선, 중1-2호선변)의 공동주택용지 내 해당구간의 주동은 도로에 대하여 주동의 장변(주 개구부면)이 직각 배치되도록 하여 소음의 저감 또는 통경축을 확보한다. · 판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한다. · 탑상형의 직각배치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동분선이 직각으로 배치한다. - 단, 접도방향 또는 대지경계선, 장아산 통경축에 대하여 $\pm 22.5^\circ$ 범위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직각배치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판상형 예시도> <탑상형 예시도> ■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의 이용 및 접근성제고를 위하여 기능별 이용 형태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 내에 적정 배치토록 한다. ■ 바람길, 통경축 확보 - 바람길 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 한다. ■ 주동은 도로 또는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건축선 폭원이상 이격하여 배치되도록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는 허용한다.
	형태	■ 지붕, 옥탑 등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 (단, 특화된 주동의 경우 예외) ■ 피로티 - 단지 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위해 주동의 지상층에 피로티를 설치 시 유효높이 4M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저감,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마감한다.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1층~3층 구간내), 중층부, 상층부(최상층 1층~3층 구간내)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한다.
	건축선	■ 대지 내에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구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별표1] 송신소의 전파제한을 고려한 고도제한



고도제한높이(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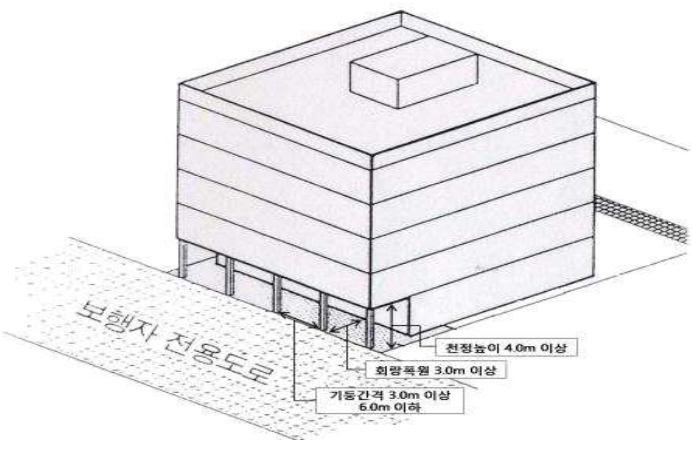


○ 근린생활용지(SR)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4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실내 낚시터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의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송신소의 전파장애를 고려한 고도제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토록 한다. ■ 전면가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는 허용 한다
	형태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형태는 근린생활시설인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단,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부자연스럽고 난잡한 형태의 개구부, 기능과 무관한 장식물의 설치는 제한한다. - 건축물 전면부의 1층 외벽면은 3/5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며, 셔터 설치 시 예도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전면도로의 보도바닥 마감 높이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하며, 휠체어 등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지붕 - 옥탑, 물탱크 등 건축물의 부속설비와 냉난방기의 실외기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한다. - 지붕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담장은 설치할 수 없다. ■ 옥외계단 - 특정점포만을 위한 독립적인 옥외의 계단, 경사로는 설치할 수 없다.

○ 상업용지(R)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일상 1~2	용도	허용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8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60% 이하
	높이		8층 이하 - 최고 층수 8층 - 송신소의 전파장애표를 고려한 고도제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아케이드 -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구간은 상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는 허용한다.
	형태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단, 인접대지의 기존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건축물 전면부 1층 외벽면의 3/5 이상은 투사형 벽으로 처리토록 하며, 셔터 설치 시에도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토록 한다. 단, 건축물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의 3/5 이상을 투시벽 및 녹 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할 수 있다. - 광장에 면한 건축물은 광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등의 공간을 확보한다. - 대지의 주소는 주출입구 우측 외벽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1층 바닥높이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전면도로의 보도바닥 마감높이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하며, 휠체어 등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옥상 등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파라넷 등으로 차폐처리토록 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 기능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 옥상에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토록 권장한다. - 담장설치를 금지한다.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일상 1~2	형태	■ 아케이드(권장사항) - 아케이드회랑의 천정높이 : 4M 이상 - 회랑의 폭원 : 3M 이상 - 아케이드의 마감높이는 전면도로의 보도바닥 마감높이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하며, 휠체어 등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접 건축물간의 아케이드의 마감높이는 동일하게 한다. <아케이드 예시도>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한다. 단,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며,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지 내에 가로경관 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 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할 수 없다. ■ 1층 벽면지정선 - 권장사항인 아케이드 회랑형성 및 단지 내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대지 내에 1층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벽면지정선을 따라 건축물의 1층 벽면을 배치한다. - 1층 벽면지정선과 함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한계선은 2층 이상부터 적용한다. - 1층 벽면지정선이란 1층 벽면의 위치가 2/3 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 주차장용지(P)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주7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말함)에 한하며, ■ 주차전용 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시설물을 허용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1	80	160	2층 이하
			주2,주5,주6, 주7	80	400	5층 이하
			주3,주4	80	640	8층 이하
	배치		■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100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는 1층에 설치 ■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를 설치(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제외)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옥상녹화(50%이상)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			
형태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색채		-				
건축선		■ 대지 내에 차폐, 타 용도와의 상충 또는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 한계선을 지정하며 대지 경계선에서 지정된 폭원 이상으로 이격하여 주차구획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결정(변경) 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 공영차고지용지(PS)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자1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의 차고지 및 주기장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의 자동차정류장 중 공영차고지에 한함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차폐 또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 공지에 차폐조경을 한다. 단, 출입구는 제외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 유치원용지(S1)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유2,유3	용도	허용 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 유치원 이외의 허용용도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4항2호에 의거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 미만 범위 내에 한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층)		4층 이하
		배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대로변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단, 건축물의 주 출입구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유2,유3	형태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담장, 대문 등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담장, 생울타리 등 친환경 자연 소재를 이용하여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한다. 단,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담장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 대문의 재료, 형태 등은 건축물과 담장이 조화되도록 한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대문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축선		- 대지 내에 교육환경 제고를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해당 공지에 도로에서 차폐되도록 조경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 학교용지(S2)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초1~3, 중1, 고1	용도	허용 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대시설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송신소의 전파장애를 고려한 고도제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형태		-
	색채		-
	건축선		-

○ 공공청사용지(Z1)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1,공2,공3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공공도서관, 보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형태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지붕 - 평지붕을 설치 시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안전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 사회복지시설용지(Z8)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사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 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 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축선		-

○ 문화시설용지(Z2) : 폐지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문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안전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색채		-
	건축선		-

○ 종교시설용지(D)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1~3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단, 종탑은 30m 이내로 함
	배치	-
	형태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안전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색채	-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 한계선을 돌출하여 배치할 수 없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결정(변경) 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관한

○ 주유소용지(Z3)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1~2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단,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1항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은 허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나목의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수리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나목의 세차장 ※ 단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지정 용도로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며 부지면적 중 50%이상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용도로 활용되어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돌출하여 배치할 수 없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지(Z4)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열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배치		■ 주변경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이격시켜 배치토록 한다.
	형태		■ 시설 또는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처리한다.
	색채		■ 시설 또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건축선		■ 차폐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해당 공지에 별표4에 따라 차폐조경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 변전시설용지(Z5)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변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의 변전소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배치		■ 주변경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이격시켜 배치한다.
	형태		-
	색채		■ 시설 또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건축선		■ 차폐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부지 경계부는 차폐조경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도면참조)

○ 배수시설용지(Z6)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배1	용도	허용	■ 배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 오수중계펌프장용지(Z7)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수1	용도	허용	■ 오수중계펌프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 가스공급시설용지(Z9)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스1, 가스2	용도	허용	■ 가스정압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 복합커뮤니티센터용지(Z2) : 신설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복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실내 낚시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형태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안전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단독주택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E1~E4	E1~E4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 조경 한다. - 단, 대지 내 옥외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조경기준은 인천시 건축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따른다.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인접대지경계부에 상호 인접하여 설치함을 권장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규모 - 단독주택용지의 모든 대지에는 최소한 1대규모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택규모별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인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대지 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옥외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내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한다. - 대지 내 주차장의 위치는 보행자 통행의 단절최소화를 위해 인접대지의 주차장과 인접하여 공동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15BL	1~15BL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거주환경 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 13BL 운연천 경계부위는 운연천 하류부 경관녹지 조성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대지 경계변에 수변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한다.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대지내 도로	■ 대지 내 도로폭원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대지 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 내 도로에서 설치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써 대지 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 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 (보행로의 입체처리 포함)로 설치한다.
		주차시설	■ 대지 내 주차시설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천시 주차장 관련 조례, 국민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보행자 통로	■ 대지 내 보행자 통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동선계획 및 구조로 설치한다. ■ 대지 내에 차량과 보행자의 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 대지 경계변에 수변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1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한다. 단, 보행자 통로는 임의로 선택 할 수 있으나 방법,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보행자 통로는 3미터 폭원 이상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등 장애자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토록 한다.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15BL	1~15BL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위치는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대 및 복리시설	- 부대시설은 대지 내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 복리시설(판매,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지 내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시 설치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수용시설	- 수생비오톱이나,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친수공간(최소 50㎡ 이상) 1개소 이상을 조성하여야 한다. - 우수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우수를 화장실세척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환경친화적 자재 사용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대지내 조경	- 대지 내 조경면적은 녹지와 조경시설(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광장, 수경시설, 3미터 이상의 보행자 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으로서 다음의 각호의 면적이상으로 확보한다. - 대지 내 조경면적은 30% 이상 - 대지 내 조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 보행자 통로변 :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를 하여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 대지 외곽도로 경계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주동) 주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 어린이 놀이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물타리를 설치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같은 대지 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 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에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근생1~4	근생1~4	대지 내 공지	■ 건축지정선 또는 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 건축지정선에 의한 건축물 전면부의 공지는 해당시설의 이용자편의를 보행공간으로 이용하며 포장은 연결된 보도포장을 준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설치 및 조경을 할 수 없다. -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한다. ■ 건축지정선으로 확보된 전면 공지는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상시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방한다. ■ 전면 공지의 바닥은 연결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차량 출입구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설치	■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교통영향 평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상업시설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일상1, 일상2	일상1, 일상2	전면 공지	■ 건축한계선 또는 1층 벽면지정선에 확보된 건축물 전면부의 공지는 상업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통행 등이 용이하도록 처리한다. ■ 보도와 연결한 전면 공지의 바닥높이는 연결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일반인 및 휠체어 등 장애인 등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 및 과다규모의 조경은 설치할 수 없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조성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형태를 준용하되,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료 및 형태 범위 내에서는 달리 할 수 있다. ■ 전면공지는 인천시 건축조례 제36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한다. 단, 1개소 당 최소면적이 45㎡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대지 내 공지 공개 공지	■ 공개공지가 지정된 대지의 가각부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시점부는 장소성 인지향상 및 일시적 만남 등의 장소로 이용되도록 설치한다. ■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광장 주변에 배치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공지는 보행자에게 상시 개방토록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단, 피로티구조인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녹지는 필요시 전체면적의 30% 범위 이상으로 조성하되, 녹지 외곽은 이동 불가능 구조물로 조성 및 보행자가 일시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 - 녹지를 제외한 공개공지의 바닥높이는 연결한 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마감한다. - 녹지에는 잔디, 지피식물, 수목 등을 식재한다. - 녹지조성 시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인천시 건축조례 제36조에 의거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1개소 당 최소면적 45㎡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일상1, 일상2	일상1, 일상2	대지 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은 인천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대지 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에 보도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인천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 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조경시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차량출입 구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부설주차 장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령 및 인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 통로사이의 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획지 내 보행자 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보행 통로	■ 상업시설용지 내에 일반인의 원활한 보행통로를 위하여 공공목적의 공공보행 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구간은 개발주체가 임의로 설정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설치 및 조경처리, 설비돌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공공보행통로는 그 폭원을 3M 이상으로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마감높이는 보도인 경우에는 보도접합부와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접합부의 마감높이와 동일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건축물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층 이외의 공공보행통로 상부는 건축물의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공된 공공보행 통로는 면적의 2/3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주차장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1 ~ 주7	주1 ~ 주7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결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차량 출입구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설치	■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100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 공영차고지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자1	자1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차폐조경 한다. 단 출입구 설치구간은 제외한다.
		차량 출입구	■ 추후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치 토록 한다.

○ 유치원, 학교시설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유1~3, 초1~3, 중1, 고1	유1~3, 초1~3, 중1, 고1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교육환경 향상을 위하여 방음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토록 권장한다.
		차량 출입구	-
		보행자 통로	■ 유치원, 학교가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공지변에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소 이상의 보행자 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통로의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 등의 방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용지(당초)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1~3, 사1, 문1	공1~3, 사1, 문1	대지내 공지	-
		차량 출입구	■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인접한 공공청사 등의 경우 공동주차출입구와 공동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자 통로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용지가 공원, 보행자전용도로변 및 공공공지에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소 이상의 보행자 통로를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통로의 위치는 이용자들의 접근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용지(변경)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1~3, 사1, 복1	공1~3, 사1, 복1	대지내 공지	-
		차량 출입구	■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인접한 공공청사 등의 경우 공동주차출입구와 공동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자 통로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복합시설용지가 공원, 보행자전용도로변 및 공공공지에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소 이상의 보행자 통로를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통로의 위치는 이용자들의 접근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종교시설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종1~3	종1~3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차량 출입구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	■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주유소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유1~2	주유1~2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한다. - 조정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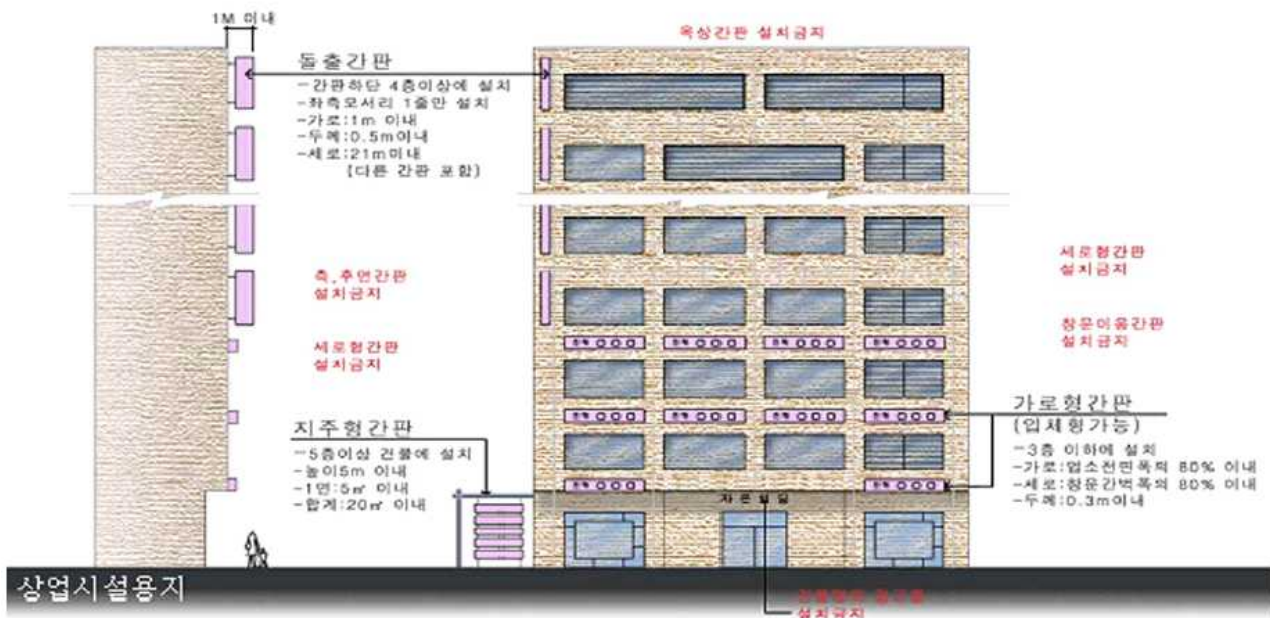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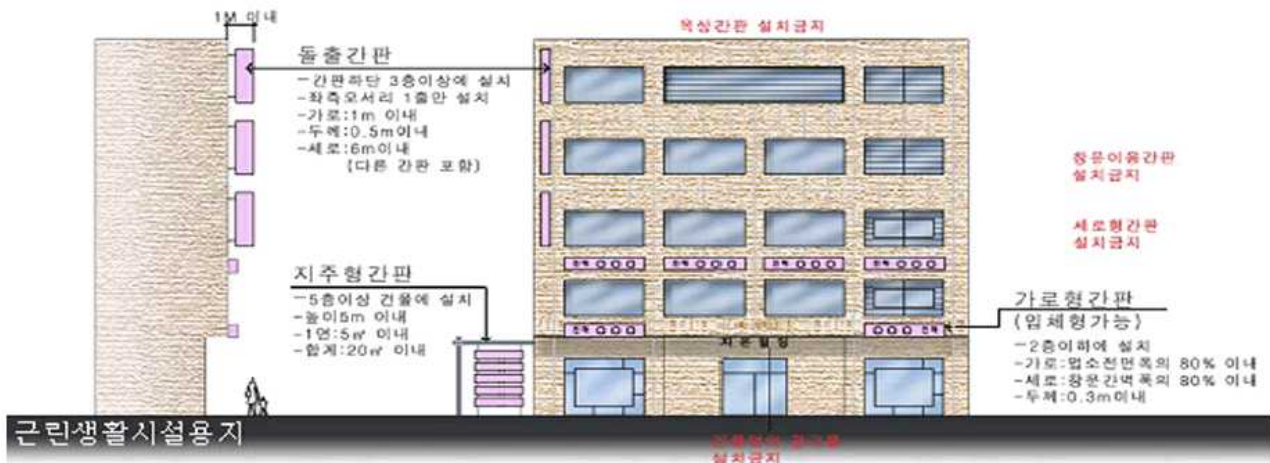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시설, 배수시설, 오수중계펌프장용지, 가스공급시설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열1, 변1, 배1, 수1, 가스 1~2	열1, 변1, 배1, 수1, 가스 1~2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해 차폐조정한다.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시설에 한한다.
		차량 출입구	-

○ 옥외광고물(간판)의 설치기준

구 분	계획내용
공통사항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에 적용토록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기타시설물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본 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과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법령 등을 따른다. ■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표시할 수 없다.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을 심의 또는 검토하여야 한다.(건축허가신청서 첨부 제출토록 한다.) ■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재질 및 색채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한다.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한다.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을 제한한다.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 및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는 간판바탕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5이상, 채도4이하에서 사용한다. -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 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 이내에서 표시한다.
내용 및 문자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이나 심벌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는 제한한다. ■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 바탕 높이의 2/3 이내로 하여야 한다

구 분	계획내용
가로형 간판	■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 설치 가능하나,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업소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다. ■ 건축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4/5 이내로 설치하고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한다. ■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2줄로 표시할 수 없다. ■ 1개 점포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업소 전면폭의 4/5를 초과 또는 2개 기둥간격을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돌출형 간판	■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간판의 하단이 3층 이상의 벽면에, 상업용지에는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한다.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문 하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 1개 점포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점포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 등이 동일한 크기여야 하며,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마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다.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를 넘을 수 없음. 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용지는 6m 이내, 상업용지는 20m 이내로 한다.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 등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1개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한다.(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토록 한다.) ■ 돌출길이 :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80cm를 넘을 수 없다.
연립지주 간판 (종합안내판)	■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가로폭은 2m 이내로 업소 수 별로 배분하여 균형있게 표시한다. ■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안쪽(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보다 0.5m 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표시한다.



Ⅲ.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8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주적체육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변경) 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1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 설 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주적 공원	체육공원	남동구 도림동 412번지 일원	35,750	증)6,638	42,38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3-85호 (2003.05.01.)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적 공원	• 체육공원 확장 - 면적 : 35,750 → 42,388㎡ 증) 6,638㎡	• 도림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의 복구 및 인근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 등을 위해 훼손지 복구사업 유형 중 공원·녹지조성사업으로 기조성된 주적체육공원을 확장하여 조성하고자 함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8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구월동)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40-1 (구월동)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40-1 (구월동)	2020.11.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대우건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9-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99번길 34 (구월동)	2020.11.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동건사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9-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구월동)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0.11.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함박외로 456 기초구간에위치하여456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9-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99번길 8 (구월동)	2009.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0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11.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455 기초구간에위치하여455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9-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99번길 34 (구월동)	2009.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0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11.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수골로 3 기초구간에위치하여3을건물번호로부여	